성주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주군에 설치 등록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7조)
라. 지역아동센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10조)

4. 참고사항

가. 관 련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0조, 제52조
나. 예산조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 법 예 고 : 2019. 8. 9. ~ 8. 28.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마. 규 제 심 사 : 규제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성주군에 등록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 함양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사업수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과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성주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임·위촉 등의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사업비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외되고 있는 지역아동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